

국 토 교 통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내 용

경상남도 창원시(○○○○과)에서는 2011. 3. 31.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목적으로 ○○○도 ○○시 ○○○○구 ○○동 일원에 ○○○○마을 도로확포장공사(L=720m, B=6m)를 위한 국고보조금(지역발전특별회계) 630,000,000원을 교부받아 2012. 4. 30.까지 615,304,175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는 등, [표]와 같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총 3,633,0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3,537,171,071원을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현황”

(단위 : 원)

공사명	공사기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계		3,633,000,000	3,537,171,071	95,828,929
○○○○마을 도로확포장공사	2011.07.04.~2012.04.30.	630,000,000	615,304,175	14,695,825
○○○누리길 조성사업	2011.11.11.~2013.01.04.	520,000,000	513,021,000	6,979,000
○○동마을공동창고 신축공사	2012.11.22.~2013.07.24.	70,000,000	69,160,660	839,340
○○산누리길 조성사업	2013.08.13.~2014.02.18.	500,000,000	482,649,000	17,351,000
○면○○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12.01.01.~2013.12.31.	198,000,000	191,757,834	6,242,166
○○동마을공용주차장 조성공사	2012.12.10.~2013.03.28.	315,000,000	314,882,294	117,706
○○○마을 경로당 설치공사	2013.01.01.~2014.12.31.	350,000,000	348,052,523	1,947,477
○○주민운동장옆쉼터 조성공사	2013.07.30.~2013.12.06.	350,000,000	347,811,860	2,188,140
○동농로개설공사	2013.12.27.~2014.06.24.	210,000,000	169,641,725	40,358,275
○○길조성사업(1차)	2014.02.17.~2014.11.30.	490,000,000	484,890,000	5,110,000

* 창원시 제출자료 재구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에 따르면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위 회계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서조항에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된 보조금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고로 반납하여야 한다.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마을 도로확포장공사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630,000,000원 중 615,304,175원을 2012. 4. 30.까지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집행잔액 14,695,825원을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는데도, 예산 집행이 완료된 2012. 4. 30.부터 4년 7개월이 지난 2016. 11. 30.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잔액 14,695,825원 상당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창원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표]와 같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 중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않은 집행잔액 95,828,929원을 국고로 반납¹²⁷⁾하지 않고 창원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5,828,929원 상당을 국고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127) 창원시에서는 매년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 정산 및 집행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서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으나, 경상남도 및 국토교통부에서 집행잔액 반납고지를 하지 않아 반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